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55

발의연월일 : 2026. 5. 22.

발 의 자 : 조경태・안철수・김선교
서천호・서범수・서일준
박충권・박성훈・김미애
김형동・한지아・김 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함)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짓 또는 허위로 등록시설을 가장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 행정제재 절차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등록된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수출한 사례가 발생하여 수입국 정부가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국제적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음.

이러한 행위는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

리나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반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식품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78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자가 단기간 내 재등록을 통해 동일·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일정 범위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또한,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 자진 폐업이나 등록취소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 절차가 개시된 이후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진 폐업신고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8조제3항 신설).

이와 함께 생산·가공 중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8조의2), 청문 대상 처분을 등록취소로 한정하되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가 생략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절차적 적정성과 함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제10호).

이를 통해 생산·가공시설 등록제도의 신뢰성과 엄정성을 제고하고, 불법·부정 유통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국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법률 제 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할 수 없다.

1.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119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20조제9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수산가공식품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해당 생산·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가 자진하여 폐업신고나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상호협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6장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자료의 제출요청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8조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취소(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9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20조제9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①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4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① ---------- ---------- ---------- ----------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할 수 없다.
<신 설>	1.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119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20조제9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① ---------- ---------- ---------- ---------- ---------- ---------- ---------- ---------- ------. -----제1호 또는 제8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수산가공식품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해당 생산·가공 시설등을 운영하는 자가 자진하여 폐업신고나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
<신 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상호협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신 설>	제78조의2(자료의 제출요청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8조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4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4조(청문 등) ①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10.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취소(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